우리 市 「从회적 거리두기」 2단계 방역 강화조치

* 現 2단계 중 강화된 내용을 적색으로 표시

1 │ 추진배경

○ 최근 인천지역 교회에서의 잇따른 집단감염 발생 등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할 정도로 위기단계에 봉착했다는 판단하에 現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대책 중. 일부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방역 조치 추진

2 | 개 요

- O (기본방향) 불요불급한 외출.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여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
 - *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, 집합·모임·행사 금 지 등 방역조치 강화
- O (적용기간) 2020. 8. 19.(수) 0시 ~ 별도 해제 시 까지
 - ※ PC방, 결혼식장의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8. 19. 18시 부터
- O (법적근거)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제1항 제2호
 - *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'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'

3 기주요 조치내용

3-1. 집회

- O (집회) 인천광역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* 행정명령 조치
 - * 금지되는 집회는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
 - ※ 집회금지 기간 : 2020. 8. 24.(월) 0시~9. 6.(일) 24시까지 [14일간]
 - ※ 공고 시행 및 인천지방경찰청 통보(2020.8.23.)

3-2. 집합.모임.행사

-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 공적 집합·모임·행사
 - ※ 이때 집합·모임·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 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**인** 집합·모임· 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
 - < 실내 50인 이상 /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>
- ▲(행사) 전시회, 박람회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 등
- ▲ (**사적 모임**) 결혼식,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장례식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
- ▲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(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)
- O (인원 기준) 원칙적으로 집합·모임·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 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,
 -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, 공간 간 <u>이동·접촉이 불가한 경우</u> 분할 된 공간(예: 교실)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 며, 다만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

< 사 례 >

- ▲ 학교 건물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, 서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 자들 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실별 응시인원이 50인 이내면 허용
- ▲ 전체 참석자가 80명인 회의의 경우, <u>20명씩 나누어</u> 서로 다른 회의실을 사용하고 영상 회의로 연결하는 경우 허용
- O (예외) 정부·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, 긴급성 등^{*}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,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- *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

3-3. 공공행사

- (정부, 지자체, 관련 산하.공공기관 등 주관 행사) 연기.취소
 - * 불가피 개최 시, 실내 50인 미만,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
 - * 모든 회식 금지, 점심식사 시,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통해 이동 최소화

3-4. 스포츠 행사

- (프로 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) 무관중
 - 야구, 축구, 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 진행

3-5. (공공) 다중이용시설

- (실내 국공립시설)
 - 정부.지자체.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(공공기관 포함)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

○ (인천대공원, 월미공원 등)

-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내, 야영장, 매점 등을 포함한 모든 실내.외 다중이용시설은 전면 폐쇄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(우울증) 예방을 위해 산책로 등 실외공간은 개방
- 공원구역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발령 ※ 2020. 8. 24.(월) 0시부터
- **(인천 해수욕장) 폐장** * 2단계 격상 시, 기 조치(8. 19. 0시)
 -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

○ (야영장.캠핑장) 개장

- 방역수칙 준수

3-6. (민간) 다중이용시설

- (고위험시설 12종)
 -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 ※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

○ (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)

- ▲학원(300인 미만) ▲오락실 ▲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*(예: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㎡ 이상) ▲워터파크 ▲종교시설(교회 제외) ▲공연장 ▲실내 결혼식장
 ▲영화관 ▲목욕장업 ▲실내체육시설** ▲멀티방·DVD방 ▲장례식장
 - *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, 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, 업종으로

구별되지 않는 경우.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

- ** 실내 체육시설 : 탁구장, 헬스장, 배드민턴장, 스크린골프장, 스크린야구장, 요가 . 필리테스, 당구장, 볼링장, 체육도장(태권도, 유도, 합기도, 검도 등) ※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 범위 추가 가능
-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<u>아래 표에 적시된</u>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

< 핵심 방역수칙 >

사업주·책임자	이용자
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*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	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

○ (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)

- 공동주책에 설치된 실내체육시설, 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운영중단 권고

3-7. 종교시설

(교회)

-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,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,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(집합제한) 실시

※ 수도권 교회 대상 핵심 방역수칙

책임자-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
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■ 이용자 간 2m(최소1

※ 수도권 교회 대상 비대면 예배 가이드라인

- ㅇ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을 위한 비대면 예배 필수인력으로 최소화하여 운영 (전체 20명 이내)
- 단,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
- ① 마스크 상시 착용
 - ② 음식 섭취 금지
 -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
 - ④ 사람간 2m(최소1m)이상 거리두기
 - ⑤ 환기 및 소독 철저
 - ⑥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
- *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,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

〇 종교시설(교회 外)

-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인천지역 내 성당, 사찰, 성원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교회에 적용된 기준에 준하여 집합 제한 권고
 - · 비대면 종교행사(미사법회 등)에 한하여 개최를 권고

《비대면 종교행사(미사·법회 등) 기준》

- 비대면 종교행사(미사법회 등)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최소화 운영(전체 20명 이내)
- 단 비대면 종교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
- ① 마스크 상시 착용 ② 음식섭취 금지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
- ④ 사람간 2m(최소 1m)이상 거리두기 ⑤환기 및 소독 철저 ⑥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
- 성가대 운영은 불가하며,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
 - ·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, 단체식사 금지

3-8. (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) 휴관 및 휴원 권고

*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

3-9. 학교.유치원

- O (학교) 수도권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.군.구 원격수업 전환
 - * 이 외 지역은 등교 인원 1/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※ 학교,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협의사항임

3-10. 기관.기업

- O (시 및 군.구. 공사.공단 직원 재택근무 시행)
 -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
 - (기간)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
 - (대상) 공무원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
 - (시행방안) 휴가, 공가, 재택근무 등 혐워 1/3 의무시행
 - *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
 - * 임신 및 육아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실시
 - * 시차 출.퇴근제 등 병행실시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※ 군.구, 공기업, 출자.출연기관 등은 市 시행기준 준용 권고(기관장 판단 시행)
- O (민간기업)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

3-10.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

- (적용대상)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 및 집회.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
- (적용기간) 2020. 8. 20.(목) 15:00 ~ 별도 해제 시까지
 - ※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처분
 - (계도기간 : ~ 2020. 10. 12.) / (시행 2020. 10. 13.)

- (적용장소) 실내*.실외**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.
 - ※ 단.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
 - * 실내 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 - ** 실외 : 집회.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. 마스크 착용할 것
 - ※ 공고 시행(2020. 8. 23.)

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관련 설명자료

<중수본 생활방역팀 업무연락, '20. 8. 23(일)>

1 집합·모임·행사 관련

- Q1. 실내 50인 이상, <mark>실외 100인</mark>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집합·모임· 행사는 어떤 것들인가요?
- 집합·모임·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**사전에 합의·약** 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 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
 - < 실내 50인 이상 /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'대상 사례' >
 - ▲ (행사) 전시·박람회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 등
 - ▲ (사적 모임) 결혼식,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장례식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
 - ▲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(단,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)
- '영업 시설 등'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행사성 격의 집합은 제외가 되며,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가 해당함.
 - 실내 50인 이상 /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'제외 사례' >
 4 영화, 뮤지컬, 연극, 쇼핑(백화점, 시장, 대형마트), 법회, 미사 등
- Q2. 채용, 자격증 시험도 못 치르는 건가요?

- 시험의 경우, 공간이 분할되고, 상호 간에 이동·접촉이 불가하면서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이 50명이내인 경우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를 수 있음
 - * (예시)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불가함

Q3. 결혼식은 어떻게 치러야 하나요?

- **결혼식**은 집합·모임·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**실내 50인 미만,**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함
 - * (예시) 주최 측(신랑·신부) 포함,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 50인 미만(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)
- 또한,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(8.19일 18시~)로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, 예식홀에서도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참석자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
-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결혼식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나, 사업주·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Q4.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야 하나요?

- 집합·모임·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춰 **실내 50인* 미만, 실외 100인** 미만으로 진행해야 함
 - * 조문 후 식사를 하는 곳의 좌석을 50인 이내로 배치하여 조문객이 50명 이상 머무르지 않도록 관리
- 또한, **장례식장**에서는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참석자 간

2m(최소 1m) 거리두기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

-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나, 사업주·이용자에 대한 300만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- Q5. 실내 50인 이상 집합·모임·행사가 금지되면 미술관, 박물관, 공연장, 영화관 등 실내 문화예술시설을 50인 이상 운영(이용)할 수 없게 되나요?
- 정부·지자체·교육청 및 소속·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 용시설 중 '실내 국공립시설'은 운영중단이 원칙임
- 국공립시설이 아닌 '미술관, 박물관, 공연장, 영화관' 등에서는 1~2m 거리 두기,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기,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(이용) 가능함
- Q6.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- 행사모임을 주최한 대상과 그 행사·모임 참석자가 처벌 대상 원칙임.
- 다만, 참석자의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판단은 달 라질 수 있음
- Q7. 실내 50인 이상, <mark>실외</mark>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 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, 제80조제7호에 따라

고발 조치(300만원 이하의 벌금)할 수 있으며,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원)을 청구할 수 있음

- Q8.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조치가 시행되면 비대면 서비스도 할 수 없는 건가요?
- '실내 국공립시설'은 운영중단이 원칙임. 다만, 시설 내에 이용자들이 모여서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'비대면만으로 서비스를 제공*'하는 경우에는 가능함

* 무관중 공연, 온라인 서비스 가능

- Q9.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집합·모임·행사가 금지 관련하여 공무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는데, 별도 기준이나 절차가 있나요?
-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며, 지자체에서는 **법적 의무 여부, 긴급성** 등*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예외 허용 여부**를 **결정**함
- 다만,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**방역수칙**은 **철저히 준수**해야 함
- * ① 법령 등 구속력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

< 예외 허용 사례 >

- ▲기업의 정기 주주총회(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)
- ▲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

Q10. 업무적인 회의나 워크숍도 집합·모임·행사에 포함되나요?

○ 집합·모임·행사란 **동일 목적**을 가진 사람들이 **사전에 합의·약** 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 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로서

○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업무적인 **회의**나 워크숍도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인원제한에 해당됨

2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관련

O1.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어떤 것들인가요?

○ 12종*의 고위험시설이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며, 고위험시설 중 유 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됨

< 집합금지 대상 시설 >

- ▲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 ▲콜라텍 ▲ 단란주점 ▲ 감성주점 ▲ 헌팅포차
- ▲노래연습장 ▲실내 스탠딩 공연장 ▲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 ▲뷔페 ▲ PC방
- ▲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▲ 대형학원(300인 이상)

O2.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○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,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할 수 있으며,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원)을 청구할 수 있음

Q3.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비대면 서비스도 할 수 없는 건가 요?

- 집합금지 조치는 **시설 내에 이용자들이 모여서 머무르지 않는 것** 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, **비대면만으로 서비스를 제공**하는 경우*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
 - * 대형학원에서 온라인 강의만을 진행하는 경우

3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관련

Q1.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시설은 어떤 것들인가요?

○ **다중이용시설(12종*)**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(집합제한) 하였음

<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>

- ▲학원 ▲오락실 ▲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예: 150m² 이상) ▲워터파크 ▲종교시설 ▲공연장 ▲실내 결혼식장 ▲영화관 ▲목욕탕·사우나 ▲실내체육시설 ▲멀티방·DVD방 ▲장례식장
-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으며, 기존에 집합제한·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유지

< 핵심 방역수칙 >

사업주·책임자	이용자
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	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
Q2. 모든 카페와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?

- 음식을 조리·판매하며 식당 내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 식점 중 일정 규모 이상(예: 시설 허가·신고면적 150㎡ 이상)을 초과하는 곳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의 대상임
- 다만, 일정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예정

Q3. 이 시설들에 전자출입명부가 모두 의무화되는 건가요?

-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^{*}들은 의무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함
 - * 학원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예: 150㎡ 이상)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, 공연장, 영화관, 목욕탕·사우나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
- 이를 위해 전자출입명부(QR코드) 설치·이용하거나 수기명부를 비 치하여야 하며, 가급적 전자출입명부를 설치·이용할 것을 권장함

4 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 관련

Q1. 어린이집, 유치원도 휴원하는 건가요?

- 어린이집은 휴원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
- 유치원은 총 인원의 1/3 수준으로 등원하는 것이 원칙이며, 돌 봄이 필요한 경우 유아 대상으로 **방과 후 과정을 운영**

Q2. 학교의 등교 개학은 연기되나요?

-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시·군·구 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,
- 유·초·중학교는 등교·등원인원을 1/3이내, 고등학교는 2/3이내 수준으로 유지